

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 세부 내용

**통영적십자병원은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돌보는
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사랑으로 진료하실
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.**

1. 채용부문 및 인원	구분	채용직종	인원	필수자격조건	비고
	계약직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	의무직	1명	< 자격조건 2개 모두 충족 > • 의사 면허증 소지자 •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	
※ 월 평균('22년 기준) 판독 및 검사 건수 : MRI 130건, CT 350건, 초음파 150건					
2. 결격사유	<div>○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</div> <div>○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</div> <div>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div> <div>○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div> <div>○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</div> <div>○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</div> <div>○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div> <div>○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div> <div>○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</div> <div>○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div> <div>○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div> <div>○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<div>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</div><div>-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</div></div> <div>※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자 : 공무원 신체검사규정 제4조의 규정 참고 (신체검사는 종합병원, 병원, 의원, 적십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됨)</div>				
3. 서류전형 가산요소 및 우대사항	○ 서류전형 평가 기준				
	구분	내역			
	의사 면허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	<div>- 다음 자격조건 2개 모두 충족</div> <div>• 의사 면허증 소지자</div> <div>•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</div>			
	국내외 학회 제출논문	<div>- 국내외 학회 제출 논문</div>			
<div>○ 우대사항</div> <div>- 서류심사 우선합격 대상자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</div> <div>- 서류전형 가점 대상자</div> <div>▶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</div> <div>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</div>					

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**취업지원대상자 (서류전형 만점의 10% 가산)**

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**취업지원대상자 (서류전형 만점의 5% 가산)**

– 면접전형 가점 대상자

▶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많은 경우

-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**장애인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**
- :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**북한이탈주민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**

▶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

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**취업지원대상자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**

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,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,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**취업지원대상자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**

- 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**장애인 (면접전형 만점의 10% 가산)**
- :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**북한이탈주민 (면접전형 만점의 5% 가산)**

○ 서류전형 평가기준 반영 유의사항

- 학력, 성별, 연령 제한 없음
- 우대사항 및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가능

○ 원서접수 방법 : **우편 및 방문, e-mail (bae0118@redcross.or.kr) 접수 가능**

※ 서류접수 마감기한 이전에 제출된 원서에 한함

○ 제출서류

- **(필수)** 응시원서(입사지원서) 또는 이력서(자유양식)
- **(필수)** 의사 면허증 사본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
- 논문 사본 (논문 제출 해당자에 한함)
- 우대자 증빙 서류 (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해당자)

***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전형시 제출서류 원본 제출**

4. 전형절차 및 일정

※ 유의사항 ※

- 필수자격조건 관련 서류 미제출시 서류전형 불합격처리
-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반영이 안될수 있음
- 각종 서류 제출에 '사진, 생년, 성별, 학교명' 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
(나머지는 식별가능한 상태로 제출)

○ 일 정

구 분	날 짜	비 고
접수기간	2022. 11. 16.(수) ~ 11. 23.(수) 17:00까지	
서류전형 합격자발표	2022. 11. 25.(금) 16:00	개별통지 및 통영적십자병원 홈페이지
면접전형	2022. 11. 29.(화) 16:00	
최종합격자 발표	2022. 11. 30.(수) 16:00	개별통지 및 통영적십자병원 홈페이지
채용 예정일	2023. 1. 1.(일)	

※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하니 유의 바람(변경시 유/무선 또는 홈페이지 공지)

※ 홈페이지 안내

- 전형별(서류전형, 면접심사 등) 합격자발표(통영적십자병원)

: <http://www.rch.or.kr/tongyeong/> ※ [바로가기-인재채용](#) ☞ 공지

기타
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제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접수마감 이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최종 합격 후 신체검사 불합격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
- 응시원서 접수 결과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(예비합격자 포함)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최종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불합격한 지원자의 서면청구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를 반환 또는 폐기합니다.
- 예비합격자는 별도로 선발하지 않습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
문의처

통영적십자병원 총무팀장 (☎ 010-2843-9310 / 유선전화 055-640-1771)

※ 문의 가능시간 (토,일,공휴일 제외)

평일 : 08:30~17:30

2022. 11. 16.

대한적십자사 회장